

공고번호 오산시청 2026-1577호

오산시청 기간제근로자(구내식당 조리원) 채용 공고

오산시청 기간제 근로자(구내식당 조리원)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7일

오 산 시 청 장



1. 채용분야 및 근로기간

채용분야	채용인원	근무 예정지	채용기간	근무시간	업무내용
구내식당 조리보조	1명	오산시청 구내식당	2026. 9. 17~ 2026. 12. 31.	08:00~16:00	조리보조

2. 임금등 근로조건

가.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

- 1) 인건비 : 11,230원/(시간)/주5일 *2026년 생활임금적용
- 2) 1주일 개근 시 1일 주휴수당 부여
- 3)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
- 4) 4대보험 가입(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)
- 5)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서 정한 공휴일에 대하여 유급 처리함.
- 6) 『근로기준법』에 의한 연장,야간 및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
- 7) 지급방식: 월급 형태로 익월 5일이내 지급, 개인별 통장입금 원칙
- 8) 근무지 : 오산시청 구내식당

3. 신청자격

가.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

나.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

다.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

- 1) 정신질환 및 전염병, 질병 등으로 작업이 부적절한 자
- 2) 우리 시에서 공무원,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불성실자 등으로 해고된 경력이 있는자
- 3) 기타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조리실

근무하기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자

라. 『지방공무원법』 제31조(결격사유),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82조(비위면적자 등의 취업제한).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마. 오산시 타 기간제 근로자 운영 사업과 근로계약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자
*오산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55세 미만 자로서 당해 공고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오산시에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

바. 지방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자

사. 건강진단서(구 보건증)발급 가능자

4. 채용일정

구분	전형일정	내용
채용공고	2026. 9. 7.(월) ~ 9. 14.(월) 16:00까지	- 시청 홈페이지 공고
서류접수	2026. 9. 7.(목) ~ 9. 14.(월) 16:00까지	- 접수처: 오산시청 구내식당 - 접수시간: 08:00~16:00 (점심시간제외)
1차 서류합격자 발표	2026. 9. 14.(월)예정	- 개별문자 통보(16:00이후)
면접심사	2026. 9. 15.(화) 14:00 예정	- 면접장소: 오산시청 구내식당 (오산시청 지하 1층)
최종합격자발표	2026. 9. 16.(수)예정	- 시청 홈페이지 공지 - 합격자에 한해 개별 문자
고용개시일	2026. 9. 17.(목)예정	- 근로자 산업안전 교육실시 및 근로계약 체결

*자치행정과 교육후생팀 영양사(☎031-8036-7164)

5. 제출서류

가. 신청서 및 응시원서 각1부(반명함판사진 첨부 2매) (붙임1,2)

나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(붙임3)

다. 주민등록등본 1부(공고 및 접수 기간 내 발급분에 한함)

라. 관련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하여 미제출 시 인정 불가)

마. 건강검진 확인서(구보건증) 1부

6. 전형방법

가. 1차 : 서류전형

- 1) 신청서 및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심사
- 2)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, **합계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선발**(단, 2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원 선발)
- 3) 서류전형 심사 동점자 발생 시,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

나. 2차 : 면접전형

- 1) 평가기준 :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, 태도 점정

다. 최종합격

- 1) 서류심사(30%)+면접심사(70%)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
- 2) 시청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문자 통보
(불합격자는 별도 통보없음)
- 3)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며, 이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자로 후보자 선출 가능
*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음

6. 기타사항

가. 복무는 오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

나. 근무자가 상습적인 결근, 지각, 조퇴하거나 음주, 근무지 이탈 또는 담당자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함

다. 응시자가 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간(반환청구기간)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(최종합격자는 제외)함.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 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,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『개인정보 보호법』에 따라 파기함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인자 부담으로 반환청구 비용은 없음

라. 응시지원서 작성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,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,

- 연락불능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여, 이를 준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마.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(예비)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
- 바. 지정된 시험일시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
- 사. 제출한 서류에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함
- 아. 오산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함
- 1)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
 - 2) 허위,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
 - 3)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
 - 4) 기타 오산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
- 차.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.
- 카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구내식당 영양사(☎031-8036-7164)으로 문의

*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